

터키 상법상 회사입법의 구조와 성격

정 용 상

<목 차>

- I. 서론
- II. 유한회사
- III. 주식회사
- VI. 지점, 연락사무소, 지분참여
-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1. 회사입법의 배경

유럽의 경제정책과 통합정책의 유동성(Dynamik)은 유럽의 인접국으로써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으로써 터키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터키가 가입한 유럽관세연합이 1995년에 발효되어 이제 는 오직 과거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논리적인 결과 만을 보이고 있다. 유럽관세연합은 특히 유럽제국과 터키간의 통상교역과 경제교역의 과정에

* 부산외대 법과대학 교수

2 比較法學 (第18輯)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이 터키와 추진한 공동의 경제구역의 극복을 위하여 관세의 대부분이 포기되었다. 동시에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유럽연합의 국경이 동유럽으로 확장된 이후, 세계 각국의 회사들은 터키를 점점 더 유리한 투자지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외국에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양상은 경제적인 이익을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사형태¹⁾의 선정에 있다. 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국의 지배적인 법규정이 적용된다. 이것은 터키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터키는 그동안의 발전적 입법과정을 통하여 국제통일법규범의 흐름에 적합한 현대적인 회사법을 가지고 있다. 터키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투자자의 필요를 염두에 둔 법적이고 경제적인 보호를 한다. 이러한 구상은 터키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진 경우 회사형태의 선택과 관련하여 투자자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함을 그 목표로 한다.

2005년 12월 17일 유럽연합가입협상의 시작을 위한 결정의 공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외국의 기업들은 터키를 점점 더 투자매력이 있는 투자적격국으로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구역은 터키정부의 국가적인 장려프로그램과 더불어 외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리한 조건(Anreiz)을 제공한다.

외국에서의 회사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형태의 선택이다. 터키 회사법(sirketler Hukuku)은 우리의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두 종류의 회사, 즉 물적회사(자본회사)와 인적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터키법상 인적회사의 존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공동의 목적을

1) 외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회사의 형태란 회사의 법적형식 또는 회사의 조직형식을 의미한다

업무에 둔 계약 즉, 회사설립계약이다.²⁾ 사원들은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목적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윤추구의 목적을 위한 모든 회사는 그 회사형태가 터키상법전(Ticaret Kanunu; TK)에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상사회사는 노동(생산)공동체(kollektif şirket)⁴⁾, 합자회사(komandit şirket), 주식합자회사(sermayesi paylara bölünmüş şirket)⁵⁾, 주식회사(anonim şirket), 유한회사(limited şirket), 협동조합(kooperatif şirket)으로 분류된다. 회사의 목적이 비영리적인 성질을 띄고 있으면, 터키 민법전상의 사단이나 재단으로 분류될 것이다.

외국의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투자자의 투자의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볼 때, 이 논문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터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두 가지 회사형태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

모든 상사회사에 대해서는 터키상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공통점은, 첫째, 상사회사는 법인으로서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 법인격을 취득하며, 동시에 상인자격(Kaufmanneigenschaft)을 취득한다. 둘째, 터키상법에 따르면 회사형태는 법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136조에 규정된 회사형태로 만 설립이 가능하다. 셋째, 상업등기부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등기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통상부에 의한 회

2) 터키 채무법(Borçlar Kanunu; BK) 제520조 참조

3) 터키 상법전(Ticaret Kanunu; TK) 제136조에서 “회사형태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는 원칙(numerus clausus)이 규정되어 있다.

4) 독일과 우리나라의 합명회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터키와 독일에서는 합명회사는 권리능력이 없다. 즉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물적회사에 속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와 제3자에 대한 관계는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밖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설립계약(정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승인이 없으면 등기는 불가능하다. 넷째, 상사회사는 법률과 회사설립계약(정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섯째, 회사설립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회사설립계약서의 공증인의 공증은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발기인의 서명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을 최저요건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영업활동기간동안 통상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⁶⁾

그 밖에 외국인인 경우 특히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과 은행업, 리스업, 특수금융업보험업을 위한 조항과 같은 특별법상의 관련규정을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II. 유한회사

1. 총론

유한회사(limited sirket)⁷⁾는 최소한 2인이상 최대한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사원이 1인으로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유한회사의 해산을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한회사는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통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상법 제512조). 유한회사(사원)는 법적으로 특별히 금지되지 않거나,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업과 보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예정된 회사형태를 법이 강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로서 등기되어

6) 터키 상법 제274조 제1항 참조

7) 터키상법 제504조 이하에서 유한회사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야 만 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사원의 출자금(Stammkapital)으로 구성된다. 표결시에 모든 사원이 사원평등의 원칙에 의해 표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유한회사는 오직 출자금에 의해서 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사원들은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회사의 국가에 대한 채무이다.

유한회사는 순이익의 5% 그리고 부가적으로 배당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⁸⁾

2. 설립절차

1) 회사설립계약의 체결

유한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들 사이에 회사설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시작된다. 회사설립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최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업등기부예의 등기가 거부된다. 즉 법정최저요건으로는 첫째, 사원에 관한 정보, 즉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등, 둘째, 회사에 관한 정보, 즉 회사의 명칭(상호), 주소, 설립자본, 회사의 목적, 회사의 존립기간, 이익과 손실의 분배 등, 셋째, 회사의 명칭(상호)은 회사의 영업활동영역의 추론이 가능해야만 하고, 터키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터키 상법 제 45조). 만약 특정사원의 상호와 회사의 상호와 동일하다면 상호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통상부에 의한 승인

유한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통상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회사설립신청서는 공증인이 인증한 회사설립계약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유한회사의

8) 터키상법 제46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원이 법인인 경우 공증인이 인증한 가입결의의 작성(Ausfertigung des Beitrittsbeschlusses)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허가절차는 요구하지 않는다.

3) 설립자본의 납입

유한회사의 설립자본은 특정된 액수로 터키리라로 납입이 되어야 한다. 설립자본의 전액(약 5백만원, 3,300유로 = 5,000,000,000 TL⁹⁾)이 설립시에 납입될 필요는 없다. 다만 회사의 설립시에 설립자본을 추후에 납입하겠다는 의사표시(채무확약)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별사원의 최저 출자금은 약 22만원(165유로 = 25,000,000 TL)이고, 출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지분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다. 즉, 지분의 양도와 매매를 위해서 나머지 사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사원의 지분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서만이 발행된다. 그래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증비용 등, 공동체에 대한 비용을 구성하는 설립비용으로써 약 160만원(1,200유로 = 200,000,000 TL)이 상계될 수 있다. 설립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설립자본의 규모와 임대한 사무실의 크기이다.

4) 등기

유한회사 설립의 최종단계로서 상업등기부예의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하고, 상업등기부예의 등기 전날 혹은 등기의 날에 회사의 정보(Angaben)를 검토하고 과세번호를 부과하는 세무관청에 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터키상법 제511조).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유한회

9) 기존 화폐는 TL(Turkish Lira)라고 부르고, 새로운 화폐는 YTL(Yeni Turkish Lira)라고 한다. 새로운 화폐는 2005년 1,000,000대 1로 화폐단위를 줄이게 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입되었다. 1달러는 148YTL(2005년)정도 임.

사는 법인격을 가진 상인자격으로 터키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5) 등기의 공시

조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상업등기부에 등기와 등기공보의 출판이 이루어진 때 비로소 확정력이 발생한다(터키상법 제511조)

3. 기관구조

회사는 회사의 기관을 통하여 회사의 의사를 표명한다. 회사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기관을 설치한 후에 영업능력을 취득한다(터키 민법 제47조).

터키의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2개의 기관을 가진다. 즉 업무집행자(이사)와 사원총회이다. 외국국적자도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와 더불어 감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산된다(상법 제548조). 사원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근거로 하여 사원총회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사원의 지위와 책임

사원의 법적지위는 모든 사원에 있어서 각각의 지분을 통해서 형성된다. 즉, 각각의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지위로부터 파생된다. 그것은 이익분배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재산권과 의결권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비재산권이 있다. 사원은 제3자에 대해서 그의 개인적인 재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설립자분을 통해서만 책임을 진다. 여기에 대한 예외는 국가에 대한 회사의 채무이다. 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사회보험과 세금의 형식으로. 이것은 개별적인 사원의 지분에 상응하게 개인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어떤 사원이 회사에 대한 10%의 지분을 가진다

면, 유한회사의 국가적인 채무의 10%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5. 조직변경과 해산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증서 만이 발행된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배제된다.

회사의 해산은 회사설립계약의 내용에 따르고(터키상법 제549조), 사원의 4분의 3이상, 자본의 과반수이상의 결의를 전제로 한다. 그 밖에 해산은 파산개시, 특정 사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판결 혹은 다른 법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다(터키상법 556, 274조 혹은 522조1항). 해산후 정관 혹은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업무집행자에 의해서 임명되는 청산인에 의한 회사의 청산이 이루어 진다. 해산이 파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은 이사(업무집행자)의 신청과 공고를 위해서 등기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청산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6. 정관의 변경

원시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정관은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사원총회에 서 변경할 수 있다. 상공부와 산업자원부에 의한 새로운 정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2003년 7월에 폐지하였다. 정관변경은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와 등기공보에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자본의 증감은 정관변경으로 간주한다. 다만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사원의 만장일치로 만 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지분의 양도는 정관의 변경 사항이 아니다.

Ⅲ. 주식회사

1. 총설

주식회사는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다(제269조). 주식회사는 오직 회사 재산 만으로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설립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정의 기준이 충족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회사가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한회사도 이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발기인들에게 회사형태의 선택권이 있다. 사원들이 주식회사의 회사형태를 선택하고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함으로써 주식회사는 존재하게 된다. 유의해야 할 또 다른 규정은 주식회사의 회사형태는 은행업, 보험업, 리스업, 투자업의 경우에는 강제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인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존립은 주주의 교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최소한 5인 이상의 자연인 혹은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구성된다. 상업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주식회사는 주주로부터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소유자가 된다. 다른 상사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는 상업등기부의 등기를 통하여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고유한 재산을 소유한다. 주식회사는 상호를 가지며, 그 상호를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으로서 특정된 설립자본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식회사는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주주는 동일한 권리(주주평등의 원칙)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주식회사는 폭넓은 투자지역에 개방되어 있는 회사형태로서 공중회사(Publikumsgesellschaft)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2. 설립절차

터키법상 주식회사 설립에는 두 가지 방법 있다. 즉 발기설립과 모집설립방법이 있다.¹⁰⁾ 실제로 터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발기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집설립에 비해서 발기설립이 그 절차와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1) 발기설립

발기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들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설립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은 발기설립의 시작을 나타낸다. 정관에는 발기설립의 형식이 확정되어야 하고, 모든 발기인의 서명과 공증인의 인증을 요구한다. 정관은 특정된 최저내용(절대적기재사항)을 증명해야 만 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의 주소, 설립자본의 액수와 종류, 주식의 수와 액면가, 회사의 존속기간, 이사 또는 이사회구성원, 감사 또는 감사회구성원

(2) 통상부에 의한 정관의 승인

통상부에 의한 정관의 승인은 의무사항이다. 승인신청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6부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출자금에 관한 은행의 확인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 발기인 중에 법인이 존재한다면 신청서에 해당법인의 담당권한이 있는 기관의 가입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통상부는 정관의 적법성과 더불어 영리적인 합목적성을 검토한다. 특별한 법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 영리적인 방향의 부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할 수

10) 발기설립은 터키 상법 제303조 이하에서, 모집설립은 터키 상법 제28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있다.

(3) 설립자본의 납입

주식회사의 설립자본은 현재 33,000유로(약 4천3백만원)이다. 자본금의 납입은 회사설립계약(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납입을 위한 채무 선언을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4) 등기와 공고

터키상법 제300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최종적인 설립을 위해서 상업등기부에 회사설립 등기가 되어야 하고, 이 등기는 등기공보(Handelsregisterblatt)를 통해서 공시되어야 한다. 등기관보에의 공고신청서에는 등기소의 등기 증명서와 정관이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를 통하여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다.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은 발기인들이 설립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스스로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인수인을 모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모집설립의 공식적인(formal) 설립과정은 발기설립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정관의 확정과 서명, 자본시장위원회(Kapitalmarktausschuss)¹¹⁾에 의한 정관의 승인, 자본시장위원회에 정관의 등기, 산업자원부와 통상부에 의한 정관의 승인, 창립총회에 의한 승인, 설립자본액 10%를 회사계좌에 납입, 일반공증을 위해 자본시장위원회에 주식을 등록, 자본시장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정보는 주식의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고 공시, 특정된 인적영역은 회보를 통하여 주식의 인수를 요구, 창립총회의 개최 등이다.

1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와 비슷함.

3. 기관구조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회사의 모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결정을 담당한다.

2) 이사회

이사회(Verwaltungsrat)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권의 범위는 회사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사회는 최소한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동시에 주주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자는 사원일 필요가 없는 유한회사와 구분이 된다. 비주주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택된다면, 그 자는 추후에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터키국적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관은 이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최대한 3년의 임기로 임명되고 재임할 수 있다.

업무집행의 범주내에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일정한 범규에 따른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구성원은 특정된 예외적 사항에 대해 회사, 개별주주 그리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3) 감사회

감사회의 기능은 감독자로서의 화신(化身)이다. 감사회는 최대한 5인의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 구성되며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감사회의 구성원은 주주일 필요가 없다. 감사회의 구성원은 설립시에는 1년의 임기, 그 다음에는 3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법인도 감독자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외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의 구성원도

터키국적자에 대한 특정된 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도 감사에 임명될 수 있다.

4. 주주의 지위와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된다(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인수한 자가 사원권을 가진다. 사원권으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는 그가 인수한 출자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의 면제는 불가능하고, 출자금의 반환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유한회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최저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주주의 숫자가 5인 이하인 경우 주식회사는 해산·청산되어야 한다.

주식은 특정된 액면가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액면가액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추론케 한다. 터키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주주의 사원권의 내용을 정관에 의해서 확장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을 통하여 예를 들어 우선주의 취득이 가능하다. 유한회사와 달리 주식회사의 지분의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주의 지분은 다른 주주의 동의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정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주권은 주주의 성명이 기재된 유가증권이다.

주식회사는 오직 회사재산 만으로 책임을 진다. 거기에서 당연히 사원의 출자금과 관련하여 예외가 있다. 즉 업무집행의 범주내에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사의 업무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 해당이사는 주주 혹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면책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와 마찬가지이다.

5. 자본

주식회사의 설립시 최저자본금은 한화로 약 4,300만원(33,300유로)이다(제272조). 출자금은 현금 혹은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터키상법에 따르면, 금액의 추후의 납입에 관한 의무선언을 교부하는 한, 모든 출자금이 즉시 납입되어야 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 해산과 존립만료(제434조)정관에 정한 존립기한의 만료(그러나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회사목적의 완성 또는 목적수행불가능, 회사자본의 3분의2의 상실,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홍결), 다른 회사와의 합병, 설립자본의 부족, 5명이하의 주주가 존재하는 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정기관의 부존재, 주주총회가 개최불가능한 때, 파산되었을 경우 등이다.

해산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해야 한다.

7. 조세 및 설립비용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부기의무는 법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나아가 터키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다른 다양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세, 광고세, 통신세, 환경세, 기부금(Fondsabgaben)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들에게 기타 비용이 부과된다.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설립비용의 1%에 달하는 공증과 관련된 비용, 330유로에 해당하는 행정비용과 상업등기와 관련된 비용 등이다.

VI. 지점, 연락사무소, 지분참여

1. 비독립적인 지점

터키 회사법상 종속적인 지점의 설치에 법정한 지점설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유무와 상관없이 외국회사의 관할지(관할권)는 터키가 된다. 그래서 외국에 주소를 둔 회사도 터키내에서 피소될 수 있다. 지점은 노동법과 세법의 측면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회사에게 권고될 사항이 아니다.

연락사무소의 개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무소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게다가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개소할 수 있다. 사무소는 상행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영역 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터키의 관할권은 사무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터키회사의 지분참여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위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설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점을 물적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현존하는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영업양도를 초래하고 형식적으로는 영업주의 교체이기 때문이다.

2. 외국인을 위한 투자권

투자참여도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사의 설립을 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법률 Nr.4875는 “외국자본의 장려(촉진)을 위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킨 2003년 6월 17일에 발효된 법률이다. 외국의 투자를 장려(촉진)하고 외국자본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

국투자자와 터키투자자사이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폐지된 “외국 자본의 장려를 위한 법률”에서 외국의 투자자들은 터키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무역을 담당하는 사무국(Staatssekretariat fuer Finanz und Aussenhandel)에 의한 부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만 했었다. 더구나 투자규모도 최소한 5만달러 이상이어야 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러한 승인이 완전히 철폐되었고, 부가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가진 이러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터키상법의 범주내에서 확정되었다. 왜냐하면 외국의 회사는 터키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외국의 회사를 내국회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등취급권이 부여되었다.

회사의 국유화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법률”은 터키 헌법, 국유화법 그리고 터키가 서명한 국제조약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을 가진 회사는 오직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 그리고 회사의 적정가치를 국가가 인정하여 지급(변제)했을 때에 한하여 국유화할 수 있다.

외국자본을 가진 회사는 터키회사와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의 제한은 터키에 설립주소(본점)와 행정주소(지점)를 둔 외국의 회사를 위해서 폐지되었고, 이러한 회사의 영업소 이전의 자유가 허용된다. 그와 반대로 터키내에 있는 외국의 자연인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쌍방의 원칙(상대방국가가 인정하면 터키도 인정한다)이 적용된다.

외국회사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한다. 터키내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외국회사의 순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외국회사의 이익배당금, 판매대금, 청산금액, 보상금 그리고 라이선스, 위탁경영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터키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외국회사는 외국에서 은행 혹은 사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외국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자와 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3.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구역은 터키정부의 국가적인 장려정책과 더불어 외국의 투자자를 위하여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터키에 투자하려는 외국회사의 투자결정이 있을 경우 터키의 자유무역구역이 고려된다. 확인된 자유무역구역은 Mersin(메르진), Antalya(안탈야), Ýzmir(이즈미르), Istanbul(이스탄불), Trabon(트라본) 등이다. 이 구역내에서의 거래와 생산은 터키내부의 관세영역과의 관계속에서 당프과 같은 이점들이 제공된다

첫째, 내부적인 관세영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점의 특정된 형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인적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

둘째, 법인세, 收入稅, 부가가치세는 없다. 임금에 있어서 원천징수는 없다.

셋째, 輸入稅도 없다. 자유무역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터키내로 수입될 수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용이 지출된다.

다섯째, 아주 좋은 인프라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유무역구역은 항만에 인접해있고 임대가격은 상대적으로 낮다.

여섯째, 회사의 영업개시후 10년간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

V. 결 론

터키는 우리의 형제국이자 우방국으로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최근 터키는 EU의 가입을 추진하

는 등, 이슬람권 국가이면서도 매우 친서방적 정책을 취하면서 개방정책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터키내로의 투자규모와 병행하여 터키정부는 외국의 투자자를 위하여 여러 장애물을 입법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장려법”을 통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터키인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와 외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터키는 이미 유럽내에서 가장 흥미있는 투자국이다. 그래서 국유화 특히, 에너지와 통신의 사유화와 같은 경제적인 정책이 적극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하였다. 사유화조치는 - 낮은 임금수준, 자유무역구역 그리고 국가적인 장려프로그램과의 결합속에서 - 터키 경제를 결정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터키시장에로의 진입은 필수적인 냉정함과 여유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먼저 자신의 회사가 이미 그와 같은 단계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터키시장의 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략하기 전에, 기업의 구조와 관련하여 기업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외부적 측면에서 회사구성원의 제문화적인 권능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터키경제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회사, 특히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기업기본법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업입법의 경향은 선진입법례를 계수하여,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비교적 선진적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점증하는 터키의 기업기본법인 상법상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제규정을 우리법상의 그것과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에 있어서 등대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각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Karadas, Nizamettin, Türkische Gesellschaftsrecht - die rechtliche Seite der Investitionsentscheidung-, imap-institut, 2006.
- Köksal, Mehmet / Tuğutlu, Monika, Das türkische Gesellschaftsrecht in der Unternehmenspraxis, 2004 (www.eurojuris.com.tr)
- Koşuzolu Cad. Halili Sok. No. 12., Gesellschaftsgründung in der Türkei, D&P Consulting. 2004 (www.d-p-consult.com)